

○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li> <li>○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li> <li>○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li> <li>○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li> <li>○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li> <li>○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li> <li>○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할 수 있다.</li> </ul> </li> </ul>

**3 과태료**

○ 법적근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라.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300	400	500
타. 법 제29조제1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1)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2)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50	250	500

# 관리감독자교육 법적근거

## 1 관리감독자교육 법적근거

### ○ 관리감독자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에 근거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예 : 생산과 관련된 부서의 조장, 반장,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

### ○ 관리감독자 교육 법적근거 :

####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항 ~ ③ 항 생략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 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으로 인해 2019년부터 관리감독자 교육을 인터넷으로 실시할 경우 **연간 16시간 중 8시간 이상을 집체** 또는 현장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2 관리감독자 교육내용

###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